

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즉시	
신청인 (등록 의무자)	성명	생년월일		전화번호 (휴대전화) ()	
	소속	직위		직급 등	
	주소				
최종 재산등록(변동)사항 신고 기준일					
유예 신청 사유				[]재외공관 근무 []해외주재사무소 근무 []교육파견 []휴직 []교육파견 []기타 ()	
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				발생일 . . . 종료일 . . .	
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				[]정기변동 신고 /[]의무면제 신고	
유예 신청 연도				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(회)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
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첨부서류	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사발령사항)	
유의사항		
○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		
업무 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·제출 (등록의무자)	→ 신고 유예 여부 결정 (헌법재판소사무처장)	→ 신고 유예 여부 통보 (헌법재판소사무처장)